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0년 5월 24일

회 사 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정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전 화) 1588-0100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파트장 (성 명) 이우열  
(전 화) 02-3011-3320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정기)

1. 일 시 : 2010년 6월 1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3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현금 7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행사 방법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정국 (참석률 : 100%)	엄홍렬 (참석률 : 100%)	임진부 (참석률 : 100%)	최종찬 (참석률 : 100%)
			찬 반 여부			
1	2009.04.28	제1호 : 제4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09.05.15	<b>■보고사항</b> (1)~(3) FY2008 주요 경영실적, 주요 추진사항 FY2009 1분기 주요 계획사항 (4)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결과보고 (6)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7) 감사실시 결과 보고	-	-	-	-
		제1호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09.06.12	제1호 : 경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제43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09.06.30	제1호 : 집행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09.08.08	<b>■보고사항</b> (1)~(3) FY2009 1분기 주요 경영실적, 추진사항, 주요 계획사항	-	-	-	-
		제1호 : 동부캐피탈(주) CP할인 대출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09.09.12	제1호 : 동부제철 유상증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09.12.14	<b>■보고사항</b> (1)~(3) FY2009 2분기 주요 경영실적, 추진사항, 주요 계획사항	-	-	-	해당없음
		제1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09.12.22	제1호 :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트론 대출조건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9	2010.02.09	<b>■보고사항</b> (1)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의 건	-	-	-	
10	2010.03.10	제1호: 은행 지불 보증장 발행의 건 (Standard Chartered Bank, 방글라데시)	찬성	찬성	찬성	
		<b>■보고사항</b> (1)~(3) 주요 경영실적, 추진사항, 주요 계획사항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정국 (참석율 : 100%)	엄홍렬 (참석율 : 100%)	임진부 (참석율 : 100%)	최종찬 (참석율 : 100%)
			찬 반 여부			
11	2010.03.31	제1호 : FY2010 사업계획(안) 확정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 동부자동차보험 손해사정(주)와의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체결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 하와이지점 법률 대리인 임명 위임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2009년 10월 29일자로 최종찬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직을 중도 퇴임함에 따라, 제7차 이사회부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였음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경영위원회	엄홍렬 위원	2009.5.27	- 제1호 : 지점이전의 건	가결
리스크 관리위원회	엄홍렬 위원 최종찬 위원	2009.5.15	- 제1호 : FY'09 리스크 한도 설정(안) - 제2호 : FY'09재보험 운영 전략(안) - 제3호 : FY'09 파생금융거래전략(안) - 제4호 :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안) ■ 보고사항 1. FY'08 하반기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자체 평가 결과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9.9.16	- 제1호 : 장기/연금보험 연동형 신공시 이율 산출기준 변경	가결
		2009.10.27	- 제1호 : FY'09 재보험 운영 전략(안) - 제2호 : 재보험관리규정 개정(안) ■ 보고사항 1. 재보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2. FY'09 상반기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자체 평가 결과 보고	가결 가결
감사위원회	임진부 위원장 김정국 위원	2009.5.13	- 제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제2호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	가결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 제3호 : FY2008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FY2009 감사계획 보고 - 제4호 :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	가결 가결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최종찬 위원장 임진부 위원 김정국 위원	2009.5.14	제1호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김정국 사외이사)	가결
	엄홍렬 위원장 임진부 위원 김정국 위원	2009.12.14	제1호 :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참고>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현황 (2010.3. 31 현재)

위원회명	구성원	비고
이사회	김순환(대표이사), 황희주(상근감사), 김정남(이사), 임진부(사외이사), 김정국(사외이사), 엄홍렬(사외이사)	- '09.10.29 최종찬 사외이사 사외이사직 사임
경영위원회	김순환(위원장), 김정남	- '09.6.12 엄홍렬 사외이사 경영위원회 위원직 사임 - '09.6.12 김정남 사내이사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순환(위원장), 엄홍렬	- '09.10.29 최종찬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직 사임
감사위원회	임진부(위원장), 김정국, 황희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엄홍렬(위원장), 김정국, 임진부	- '09.10.29 최종찬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직 사임 - '09.12.14 엄홍렬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4	6,000,000,000	88,604,590	22,151,148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총액임

주2) 최종찬 사외이사(2009.10.29.퇴임)에 대한 지급액 포함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다시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일반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산업은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규제가 많고, 자동차보험과 장기상해보험 등 가계성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익창출원인 자산운용부문의 성과와 수입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수익이 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산업은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경기후행적 특성이 강하며, 보험영업 자체가 계절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이 계절성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 그리고 겨울철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율 상승, 여름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손해율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 (2) 시장규모 및 성장성

2010년 3월말 현재 손해보험업계에는 국내원수사 13개 (자동차보험 전업사 1), 재보험사 1, 보증보험사 1, 외국사 12개 등 총 27개의 손해보험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FY'05년부터 FY'09년까지 국내보험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은 14.3%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 제외한 국내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기준)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Y'09년('09.4.1~'10.3.31)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40조3,298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6.0%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증별로는 장기보험이 전년동기대



비 24.5% 증가한 24조9,938억원을 시현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은 4조1,2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1조2,1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일반보험 10.9% (전년비 0.6%p 감소), 자동차보험 31.4% (전년비 3.6%p 감소), 장기보험 57.7% (전년비 4.3%p 증가)로 장기보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3개 국내 원수보험사 기준 당사 추정)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억원)

구분	FY'05	FY'06	FY'07	FY'08	FY'09(추정)
시장전체	236,204	272,493	314,501	347,775	403,298
(G/R)	9.9%	15.4%	15.4%	10.6%	16.0%

주) 13개 국내손해보험사 기준임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FY'09 사업년도에 5조9,805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대비 16.6%의 매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조4,882억으로 전년대비 1.2% 성장하였고, 일반보험은 5,353억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3조9,570억을 시현, 전년대비 24.3%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7억원 감소하여 7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632억원이 증가한 3,815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52억이 감소한 2,263억을 시현하였습니다. 총자산은 10조5,996억으로 전년 3월말 대비 1조6,467억 증가하였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377억원이 증가한 4,099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FY'09 사업년도에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로 인한 특수효과로, 당사는 물론 업계 전체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향후 실손 보장한도의 축소, 중복가입 사전확인, 추가 가입여력의 저하 등으로 초회보험료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나, 계속보험료의 유입에 따라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정상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

정의 추진으로 퇴직보험 폐지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과의 경쟁 격화,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으로 보험시장 가격경쟁 촉진, 보험 회사의 리스크관리 공시제도 시행,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등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손보사 간의 경쟁은 물론 손/생보사간 경쟁, 더 나아가 타 금융권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언더라이팅 강화, 사업비 절감을 통한 이익구조 개선, 업무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신성장 영역 발굴, 자산운용경쟁력제고,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FY'09년도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 분		자동차	장기	일반	합계
FY'09 (추정)	동부	13.3	15.8	13.0	14.8
	삼성	28.1	26.3	28.3	27.0
	현대	14.9	16.0	19.2	16.0
	LIG	11.1	13.9	18.3	13.6

註) 13개 국내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당사에서 추정한 현황임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분	FY'09 (추정)	FY'08	FY'07
삼성화재	27.0	28.0	29.1
현대해상	16.0	15.9	16.0
동부화재	14.8	14.7	15.0
LIG손보	13.6	13.2	13.4
메리츠화재	8.2	8.3	8.0
한화손보	6.7	6.5	6.5
흥국화재	4.7	4.2	3.2
롯데손보	3.5	3.0	2.7

구분	FY'09 (추정)	FY'08	FY'07
그린손보	2.0	2.3	2.2
악사다이렉트	1.4	1.6	1.7
현대하이카다이렉트	0.9	0.9	0.8
에르고다음다이렉트	0.6	0.7	0.8
더케이손보	0.6	0.7	0.6

### (3)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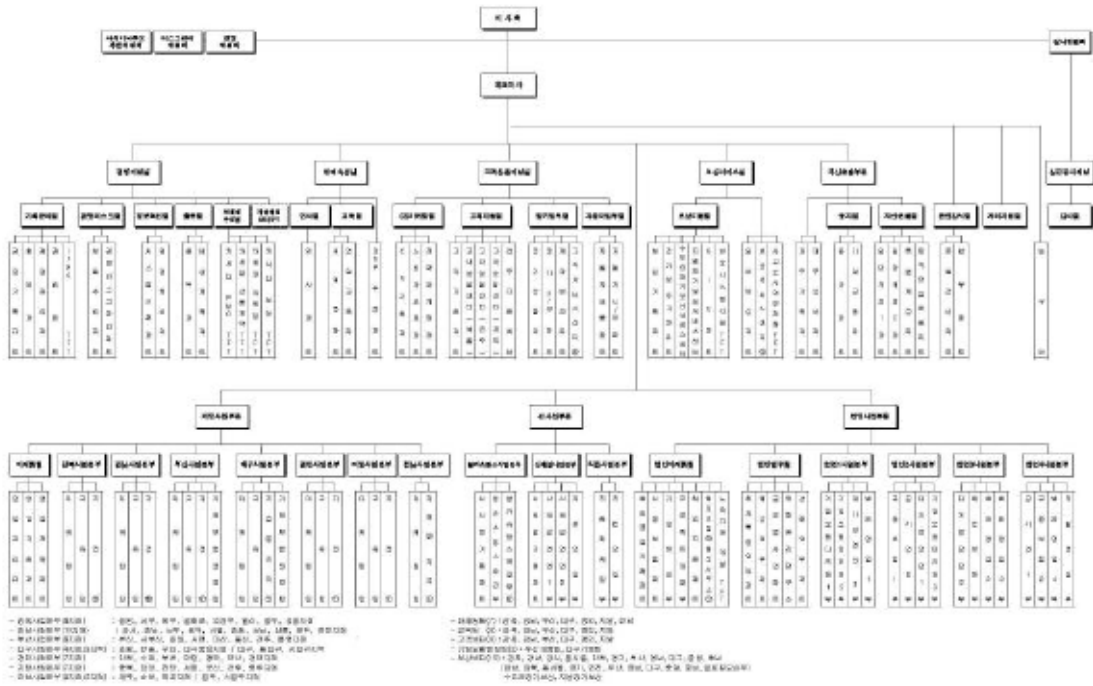
국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상위 나-(2)시장점유율에서 보듯이, 상위 4개 보험사가 원수보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적 시장구조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중소형사의 M/S가 상승 반전하며 시장집중화 추세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저가형 장기보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매출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고, 온라인 직판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채널은 설계사, 대리점 중심의 전속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비전속대리점 및 온라인 직판 채널이 고성장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온라인 직판 채널은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속히 확대되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2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비전속 대리점채널의 영향력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5) 조직도



당사조직도(2010.4.1)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43 기 2010. 3. 31 현재

## 제 42 기 2009. 3.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3기	제 42 기
I. 현금및예치금	579,735,646,795	180,804,985,822
II. 유가증권	5,490,422,703,061	4,721,612,808,567
III. 대출채권	2,149,732,047,376	1,970,626,250,020
IV. 유형자산	391,868,024,942	350,919,636,252
V. 기타자산	1,765,972,193,075	1,458,354,714,539
VI. 특별계정자산	221,929,528,513	270,593,783,010
<자산 총계>	10,599,660,143,762	8,952,912,178,210
I. 책임준비금	8,323,692,494,315	6,972,121,368,580
II. 비상위험준비금	409,873,178,272	372,191,345,547
III. 차입부채		15,000,000,000
IV. 기타부채	457,824,687,975	458,350,567,332
V. 특별계정부채	234,801,324,408	295,080,813,077
<부채 총계>	9,426,191,684,970	8,112,744,094,536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자본조정	(-)50,211,691,406	(-)29,655,475,8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9,688,459,176	(-)225,236,356,730
이익잉여금	1,210,055,827,856	1,021,747,134,686
<자본 총계>	1,173,468,458,792	840,168,083,674
<부채와 자본 총계>	10,599,660,143,762	8,952,912,178,210

주) '(-)'는 부의 수치임

- 손익계산서

<순익계산서>

제 43 기 (2009. 4. 1 부터 2010. 3. 31 까지)

제 42 기 (2008. 4. 1 부터 2009. 3.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I. 영업수익	6,957,148,544,255	6,078,491,071,022
II. 영업비용	6,685,904,354,477	5,791,708,925,604
III. 영업이익	271,244,189,778	286,782,145,418
IV. 영업외수익	27,594,176,094	16,355,778,977
V. 영업외비용	5,083,456,122	6,135,896,44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3,754,909,750	297,002,027,950
VII. 법인세비용	67,438,429,566	65,494,410,546
VIII. 당기순이익	226,316,480,184	231,507,617,404
IX. 주당순이익	3,575	3,65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3 기 (2009. 4. 1 부터 2010. 3. 31 까지)

제 42 기 (2008. 4. 1 부터 2009. 3.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36,544,332,890	248,653,206,38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256,635,720	18,249,336,515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등	(-)28,783,014	(-)1,103,747,532
3. 당기순이익	226,316,480,184	231,507,617,404
II. 임의적립금이입액	5,333,333,333	5,333,333,333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27,473,755,000	243,729,904,000
1. 이익준비금	-	750,900,000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2. 배당금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 당기 : 750원 - 전기 : 600원	47,473,755,000	37,979,004,000
3. 임의적립금	180,000,000,000	205,000,000,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403,911,223	10,256,635,720

주) '(-)'는 부의 수치임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u>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u>	제4조(공고의 방법) ————— <u>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idongbu.com">http://www.idongbu.com</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u>	·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289조 ③항)
제10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생략)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u>이사회</u> 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0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사회</u> 의 결의로 정한다.	·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의무공고가 아닌 사항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5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b>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b>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④(생략)</p>	<p>제15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_____ _____ <b>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b> _____.</p> <p>②~④(현행과 같음)</p>	<p>·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363조 제①항)</p>
<p>제2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p> <p>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b>서면으로</b>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2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p> <p>① _____ _____ <b>서면 또는 전자문서로</b>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368조의2 제①항)</p>
<p>제25조 (이사의 선임)</p> <p>①~③ (생략)</p> <p>&lt;신설&gt;</p>	<p>제25조 (이사의 선임)</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b>사외이사는 제33조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b></p>	<p>· 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제7조)</p>
<p>&lt;신설&gt;</p>	<p>제25조의2 (사외이사의 자격조건)</p> <p>① <b>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p> <p>1.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p> <p>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3.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4.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p>	<p>· 손해보험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제6조)</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5.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6.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8.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p> <p>-</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1.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15조 제4항 제6호 내지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2.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3.최대주주</p> <p>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p> <p>5.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6.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p>	
<p>제26조 (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p> <p>② (생략)</p>	<p>제26조 (이사의 임기)</p> <p>① _____ .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b>1년</b> 으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p> <p>②(현행과 같음)</p>	<p>· 손해보험회 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제11조)</p>
<p>제3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② (생략)</p> <p>③ 이사회 의장은 <b>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b></p>	<p>제3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② (생략)</p> <p>③ 이사회 의장은 <b>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b></p>	<p>· 손해보험회 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제16조)</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0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b>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b>	제40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b>_____,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b>	· 외감법 개정 사항 반영(제4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2제⑥항)
<신설>	<b>부 칙</b> <b>1. 이 정관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b> <b>2. 제25조의2 및 제26조의 제①항의 후단은 본 정관 시행 후 선임 또는 연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적용한다.</b>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근영	1937.09.16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선정	1954.10.2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황희주	1951.10.1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근영	법무법인 세종 고문	- 한국산업은행 총재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없음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없음
황희주	동부화재(주) 상근감사위원	- 삼성화재(주) 감사실장 - 삼성화재(주) 대리점부장	없음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애니카랜드 (주) 상무이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이근영	1937.09.16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선정	1954.10.2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황희주	1951.10.1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근영	법무법인 세종 고문	- 한국산업은행 총재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 원장	없음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없음
황희주	동부화재(주) 상근감사위원	- 삼성화재(주) 감사실장 - 삼성화재(주) 대리점부장 - 애니카랜드 (주) 상무이사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 4 )	5 ( 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

주)상기 전기 이사수는 2009년 10월 29일에 사임한 최종찬 사외이사가 포함된 수치

입